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화재·폭발 예방 관련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사항 안내

1. 귀 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(안전보건규칙 제241조)이 개정*되어 '26.3.2.부터 시행하였으니,

* 개정사항: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(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)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(KFI 인증)을 사용

- 각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의 안내자료를 사업장 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"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알림"에서도 확인 가능

3.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·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

'25.10.28.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화재·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소개 →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

붙임: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. 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송호은

팀장

대결 2026. 3. 5.

오숙

과장

전결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1119

(2026. 3. 5.)

접수

우 44661

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(옥동 254-2 남강빌딩) 6층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52-228-1898

팩스번호 0503-8803-0450

/ hesong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